4.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926

발의년월일 : 2024. 3.

발 의 자:대구광역시의회

(운 영 위 원 장)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7.25.) 및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2023.11.24.)에 따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소위 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정책연구용역 관련 위원회 위임에 따른 소위원회의 업무 조항 신설(안 제8조)

다.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책연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임된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을 "운영 및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u>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u>
	<u>다.</u>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u>동의무자인 경우</u>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u> 우</u>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u>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u>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
	② 위원회 심의 · 의결의 이해당
	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제8조(소위원회) ① (생 략)

- ② <u>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u> <u>호와 같다.</u>
- 1. · 2. (생략)

<u><신 설></u>

- 3. (생략)
- ③ ④ (생 략)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u>운영</u>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 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3. 정책연구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위임된 정책연구용역과 관 련된 사항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세칙)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